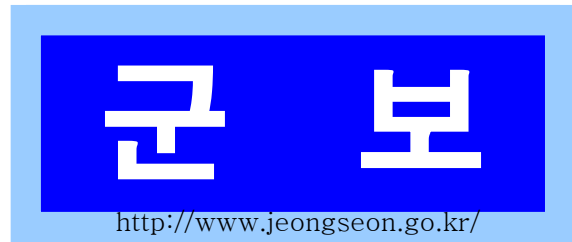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95호 2009. 6. 3. (수)

【훈 령】

- 정선군훈령 제378호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1

【예 규】

- 정선군예규 제189호 정선군 성희롱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2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80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3
- 정선군고시 제2009-81호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34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5
- 정선군공고 제2009-348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7
- 정선군공고 제2009-34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
- 정선군공고 제2009-35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5
- 정선군공고 제2009-35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8
- 정선군공고 제2009-365호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27
- 정선군공고 제2009-367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28
- 정선군공고 제2009-368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29
- 정선군공고 제2009-370호 예미농공단지 조성계획 주민설명회 개최공고.....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5. 21.

정 선 군 수

정선군훈령 제378호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57세”를 “60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정선군 성희룡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5. 18.

정 선 군 수

정선군예규 제189호

정선군 성희룡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

정선군 성희룡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선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지명”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 지역본부 정선군지부장이 추천”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성희룡심의위원회 구성시 정선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선군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여 성희룡 심의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성희룡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자 변경 (안 제11조)
 - － 「정선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선군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변경

정선군고시 제2009-80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고시 합니다.

2009. 5. 29.

정 선 군 수

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결정·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2년~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수 :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160-1번지 외6필지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2)당 가격(원)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고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9. 6. 30. 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 560-2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고시 제2009-81호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 5. 29.

정 선 군 수

1. 2009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9년 1월 1일 기준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 : 114,832필지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2)당 가격(원)(필지별 내역 “별첨”)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09. 6. 1 ~ 2009. 6. 30(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033-560-2284)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34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19.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행정기구 신설(안 제3조)

○ 자치행정과 다음에 “녹색정책과”를 신설함.

나. 부서별 사무조정(안 제3조 제2항)

○ 기획감사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사무를 녹색정책과로 이관함.

○ 녹색정책과에 “기후변화 대응사무 전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행정디자인 및 경관관리 사무”를 분장함.

○ 산업경제과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을 녹색정책과로 이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를 “자치행정과, 녹색정책과, 세무회계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녹색정책과장

- 기후변화 대응사무 전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 연료·전기에 관한 사항
-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 행정디자인 및 경관관리 사무

제3조제2항제7호 중 “농정 및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을 “계량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348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19.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의 신설 및 부서장의 직급 조정

- 녹색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농업정책과장 : 지방행정·농업5급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지방행정5급 또는 지방농업5급

나. 사무의 조정

- 기획감사실 “지방분권시책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삭제함.
- 주민생활지원실에 “세 자녀 이상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을 추가로 분장함.
- 자치행정과 “세 자녀 이상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삭제함.
- 녹색정책과에 “지방분권시책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가스시설 시공업 및 열관리시설 시공업 등록관리”, “연탄제조업 관리”, “에너지 관리”, “계량기 관리”,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도시경관조성 사업”,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그밖에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녹색성장 관련 사무”를 분장함.

- 농업정책과에 “한해대책용 양수시 관리”,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수급계획 및 지도·감독”사무를 추가로 분장하고, 소멸되었거나 농업기술센터와 중복 기입된 사무 정리
- 산업경제과의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연탄제조업 관리”, “에너지 관리”,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무를 삭제함.
- 건설도시과의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사무를 삭제함.
-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중 농업정책과 사무와 중복 기입된 사무 정리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문화과장·산업경제과장”을 “자치행정과장·녹색정책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문화과장·산업경제과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를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로 한다.

제4조제65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에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세 자녀 이상세대 양육비 등 지원사업

제6조제82호 및 제9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녹색정책과) 녹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분권시책추진
2. 균형발전 시책 추진
3.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4.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5.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7.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8.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9. 연탄제조업 관리
10. 에너지 관리
11.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12.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13.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관리
14. 도시경관조성 사업
15.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16.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17. 그 밖에 타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녹색성장 관련 사무

제10조제4호, 제25호 및 제1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3호, 제45호 및 제13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59호 및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리

25. 남평리 문화마을 관리

131. 가축질병 상황실 운영

159. 한해대책용 양수기관리

160.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수급계획 및 지도·감독

제12조제30호, 제31호, 제33호, 제34호, 제37호 및 제5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88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8호, 제20호, 제23호, 제26호,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34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19.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가.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 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는 유능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총정원 : 564명 (현행과 같음)
 - 집행기관 : 553명 (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 (현행과 같음)
-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 : 안 [별표1], [별표2]
- 다. 직급별 비율조정에 따른 정원의 조정
 - 일반직 : 6급 증3명, 7급 증9명, 8급 △5명, 9급△7명
 - 기능직 : 기능6급 증1명, 기능7급 증6명, 기능8급 증3명, 기능10급 △10명
 - 연구·지도직, 별정직, 정무직 : “현행유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로 한다.

제2조 중 “군”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중전의 제3조) 및 제5조(중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1·별표2·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 고용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80% 이상	18% 이내	2% 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7.5% 이내	33% 이내	23% 이내	9.5%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 이내	16% 이내	17% 이내	32% 이내	30%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 이내	50% 이내	29% 이내	12% 이내	2% 이상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564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433	-				
3급	-					
4급	3		3			
5급	24	2	10	2	1	9
6급이하 계	406	-				
별정직 계	12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계	12	-				
연구직 계	1	-				
연구관	0	-				
연구사	1	-				
지도직 계	19	-				
지도관	2			2		
지도사	17	-				
기능직 계	98	-				

정선군공고 제2009-35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19.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가.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 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는 유능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정원 : 564명 (현행과 같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62명 (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 (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 (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7명 (현행과 같음)
- 읍 면 : 178명 (현행과 같음)

다. 기구 신설 및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에 따른 정원 상계

<일반직>

- ① 행정6급 증2명 ↔ 행정8급 △2명
- ② 행정6급 증1명 ↔ 행정·시설8급 △1명
- ③ 행정7급 증5명 ↔ 행정8급 △2명, 행정9급 △3명
- ④ 세무7급 증1명 ↔ 세무9급 △1명
- ⑤ 사회복지7급 증1명 ↔ 사회복지9급 △1명

- ⑥ 시설7급 증1명 ↔ 시설9급 △1명
- ⑦ 간호·의료기술7급 증1명 ↔ 의료기술 9급 △1명

<기능직>

- ① 운전·기계6급 증1명 ↔ 기계10급 △1명
- ② 통신7급 증2명 ↔ 통신9급 △1명, 통신10급 △1명
- ③ 운전7급 증2명 ↔ 조무10급 △1명, 전산10급 △1명
- ④ 기계7급 증1명 ↔ 기계8급 △1명
- ⑤ 조무7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 ⑥ 조무8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 ⑦ 전기8급 증1명 ↔ 전기10급 △1명
- ⑧ 운전8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 ⑨ 전산8급 증1명 ↔ 워드10급 △1명
- ⑩ 조무9급 증1명 ↔ 조무10급 △1명

라. 직렬별 정원 조정

<일반직>

- ① 행정5급 증1명 ↔ 의무5급 △1명
- ② 행정·환경7급 증1명 ↔ 행정7급 △1명
- ③ 행정·농업7급 증1명 ↔ 농업7급 △1명
- ④ 시설7급 증1명 ↔ 통신7급 △1명
- ⑤ 통신8급 증1명 ↔ 시설8급 △1명
- ⑥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증3명 ↔ 농촌지도사 △3명

<기능직>

- ① 필기10급 증2명 ↔ 기계10급 △2명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35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5. 22.

정 선 군 수

1. 규 칙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강등관련 징계규정을 정비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통일적 처리 기준을 신설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 지도록하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위 유형별 위반행위 세분화 및 징계양정기준 마련(개정)
 - 신설된 “강등” 징계를 포함하여 세분화된 비위 유형별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6단계의 징계양정기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을 새롭게 적용(안 제2조 제1항 별표 1)
-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마련(신설)
 - 행위자에 대하여 엄벌 처벌하고자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별 세부 징계처리 기준”을 신설(안 제2조제1항 별표 1의2)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마련(신설)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처리기준을 격상(예규 ⇒ 규칙) 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신설(안 제2조제1항 별표 1의3)
-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개정)
 -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과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3항),
- 수사기관 통보 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신설)

-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사건(음주사건 제외) 통보 결과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 마련(안 제2조의 2)

○ 징계시효 및 징계의 감경 제외대상 변경(개정)

- 징계의 감경제외 대상도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 대상비위”에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변경(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전화 560-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인사위원회”를 “정선군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로,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을 “공적, 누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4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로 지정된 비위”를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의2 및 별표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u>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u> 나. <u>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u>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u>파면</u> <u>파면</u> 파면 파면-해임	<u>파면-해임</u> <u>해임</u> 해임 강등-정직	<u>해임-강등</u> <u>강등-정직</u> <u>강등-정직</u> 감봉	<u>정직-감봉</u> <u>감봉</u> <u>감봉-견책</u>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u>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u> <u>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u> 나. 기 타	<u>파면</u> <u>파면-해임</u>	<u>해임</u> <u>강등-정직</u>	<u>강등-정직</u> <u>감봉</u>	<u>감봉-견책</u>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u>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u> 나. <u>무단결근</u> 다. 기 타	<u>파면</u> <u>파면</u> 파면-해임	<u>해임</u> <u>해임-강등</u> <u>강등-정직</u>	<u>강등-정직</u> <u>정직-감봉</u> 감봉	<u>감봉-견책</u> <u>견책</u>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u>비밀의 누설·유출</u>	<u>파면</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나. <u>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u>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u>	<u>감봉-견책</u>
다. <u>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정직-감봉</u>	<u>감봉-견책</u>
라. <u>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마. <u>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u>해임-강등</u>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u>강등-정직</u>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u>해임-강등</u>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u>강등-정직</u>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u>강등-정직</u>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u>강등-정직</u>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u>강등-정직</u>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u>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u>		<u>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u>		<u>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u>	
	<u>수동</u>	<u>능동</u>	<u>수동</u>	<u>능동</u>	<u>수동</u>	<u>능동</u>
<u>100만원 미만</u>	<u>경징계</u>	<u>경징계</u>	<u>경징계</u>	<u>중징계</u>	<u>중징계</u>	
<u>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	<u>경징계 · 중징계</u>	<u>중징계</u>	<u>중징계</u>			
<u>300만원 이상</u>	<u>중징계</u>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u>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u>	<u>경징계</u>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u>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3. <u>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u>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u>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u>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u>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u>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u>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정선군공고 제2009-3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5. 26.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09.05.27~ 2009.06.09(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압류 물건	송달불능 사 유
김용기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100 (3반)	재산세(토지)외 10건	2,624,900	부동산	폐문부재
이현순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571-1 백송마을 2701동 1503호 (9통1반)	취득세(부동산) 외 1건	598,680	부동산	이사감
장 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179-2 삼부르네상스파크1 아파트 201호(13통)	취득세(부동산)	3,093,900	부동산	폐문부재
이금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90-19 (12통6반)	재산세(토지)	161,330	부동산	폐문부재
이중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88-1 송화지구우미이노스빌 112동 502호 (59통)	재산세(토지)외 1	124,530	부동산	폐문부재

정선군공고 제2009-367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정선군계획시설사업(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8.

정 선 군 수

1. 송달 받을자의 주소·성명

성 명	주 소	비 고
(망)유동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51	소유자 사망
미등기	토지 3필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

2. 재결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보상금액(원)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가	금액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정선읍 애산리	산174-1	임	51.89	3,800	197,220	(망) 유동근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51			
토지	“	468	전	1,808	50,400	91,123,200	미등기				
토지	“	469	전	754	43,700	32,949,800	미등기				
토지	“	474	전	235	50,950	11,973,250	미등기				

3. 수용시기 : 2009. 6. 11

4. 공고기간 : 2009.5.28 - 2009.6.11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033 560-2563).

정선군공고 제2009-3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미등기 전매)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였으나, 폐문부채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05. 29. ~ 2009. 06. 12.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당 사 자	성 명	강성환 (540215-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3-1 논현휴먼시아 508-120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전매계약을 체결(미등기 전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통보 ⇒ 18,891,160원 × 2건 = 37,782,320원(과태료 금액)				
법 적 근 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동법 제11조 및 12조 - 동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				
납 부 기 한		2009. 07. 02.				
이 의 신 청		기관명	정선군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연락처	☎ 033-560-2269 FAX : 033-560-2307			
		유의사항	- 위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을 경우 정선군청 민원봉사과로 오시면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실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공고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최고77%)], 제52조[관허사업 제한], 제53조제1항[신용정보 제공], 제54조[감치]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05. 29.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370호

예미농공단지 조성계획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미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9. 06. 02.

정 선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72번지 일원
- 다. 조성면적 : 107,712㎡
- 라. 시 행 자 : 정선군

2. 공람내용

- 가. 주민공람
 - 기 간 : 2009.06.02 - 2009.06.21
 - 장 소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 공람사항 : 농공단지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 나. 합동설명회
 - 일 시 : 2009.06.09(화) 14시
 - 장 소 : 정선군 신동읍사무소 2층 회의실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나. 제출장소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 다.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정선군 산업경제과에 서면으로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

정선군 산업경제과(☎033-560-2352, FAX033-560-25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